

Chapter 13 Conditions and Time

제6관 법률행위의 부관

제1항 서설

I.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에 대하여 특수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II. 부관의 종류

1)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의 3종류가 있다. 민법은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총칙편에 일반규정을 두고 부담부 증여(제561조)와 부담부 유증(제1088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 증여나 유증에 따르는 부담도 법률행위의 부관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의 부담은 일방의 당사자가 행한 무상연출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하려는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기한의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시간적으로 특별한 제한을 부가하는 것과는 그 법률요건이 다르다.

III. 적용범위

1) 조건·기한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닌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본래의 의미의 조건·기한을 부가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준법률행위 중에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제15조), 이행의 청구(제168조 제1호, 제387조 제2항, 제544조 등), 거절(제132조, 제460조)의 의사통지에 대해서는 조건·기한을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이행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정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조건·기한이 아니다.

IV. 부관의 해석

조건·기한의 존부나 효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다룬다. 조건·기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이러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제2항 조건

I. 의의

1. 개념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그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과

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그 자체인 것이다.

2. 조건사실

가) 조건이 되는 사실은 그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사망 등)은 기한으로서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나)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II.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다(제147조 제1항). 그리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제2항).

2.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적극조건이란 장래의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조건사실로 하는 경우 즉 사실의 현상에 변경이 있는 것을 내용으로(합격하면) 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조건이란 조건이 되는 사실의 현재의 상태가 변경이 없는 것을 내용으로(합격하지 아니하면)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1) 이것은 조건이 되는 사실과 당사자의 의사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2) 수의조건이란 조건이 이루어질 것인지의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다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마음이 내키면) 순수수의조건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지만 그 밖에 다른 의사에 의한 사실상태의 성립(내가 소법전을 사면)도 요구하는 단순수의조건으로 구분된다. 순수수의조건은 언제나 무효이지만 단순수의조건은 유효하다.

3) 비수의조건이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이에는 조건의 성사여부가 당사자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우성조건(자연의 사실)과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 의사와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혼성조건(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이 있다.

4. 가장조건

가장조건이란 외관상으로는 조건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조건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정조건

법정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명문으로 요구하는 요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행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또는 수증자의 생존(제1073조 제1항, 제1089조 제1항), 특별법상 요구되는 일정한 토지나 임야의 매매허가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조건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2) 불법조건

불법조건이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불법조건이 있

는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3) 기성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실현된 경우가 기성조건이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2항).

4) 불능조건

조건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가 불능조건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라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제151조 제3항).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의의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존속이 안정되어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나. 공익상의 금지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혼인, 이혼, 입양, 인지, 상속의 포기 등 신분상의 행위와 확일성이 요구되는 어음, 수표행위(어음법제1조 제2호, 수표법 제1조제2호), 근로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언은 신분행위이지만 유언자 사후의 재산처리가 목적이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제1073조제2항).

2. 사익상의 금지

1) 조건을 붙일 때 법률행위의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가 그 예이다. 그러나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 의의

1)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한다. ‘조건의 성취’란 조건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조건의 불성취’란 조건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자는 부정·부당하게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3)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 이해되므로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조건성취의 의제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1항).

2) 여기에서 ‘당사자’라 함은 조건성취로 직접 불이익을 받게 되는 조건부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일방이다. 따라서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자는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조건 성취의 방해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이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이든지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평가되는 행위이면 충분하다(대판 1967.12.5. 66다2231). 고의에 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주장한 때에 조건성취의 효과가 발생한다.

5)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상대방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때이다(대판 1998.12.12. 98다42356).

3. 조건불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그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2항). 다만, 그 요건이나 효과는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경우에 준한다.

4. 효과

1) 조건의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 효력이 생기고(제147조 제1항),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 효력을 잃는다(제2항).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3항).

2)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판 1983.4.12. 81다카692). 즉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해제조건일 경우에는 의무를 면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효력을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대판 2006.12.7. 2004다3319). 그러나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한다(대판 1992.5.22. 92다5584).

V.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의의

조건의 성否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을 희망하거나 기대하게 된다. 민법은 이러한 기대를 일종의 권리(기대권)로 보호하고 있는데 이 권리를 ‘조건부 권리’라고 한다.

2. 조건의 성취확정 전의 효력

1) 침해금지(소극적 보호)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否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48조). 즉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생긴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하여 채무자의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은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입장이다.

2) 의무자의 처분행위

가) 통설은 계약당사자인 의무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목적물 매각)를 한 때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즉 제3자를 부당히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한다. 조건부권리에 가등기를 인정한 제도(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조건부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나) 침해의 효과

통설은 조건부권리 침해의 효과는 조건부로 발생한다고 한다. 즉 손해배상청구권도 처분행위의 무효도 조건성취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불성취로 확정되면 결국 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건부권리자는 조건성취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3) 제3자의 침해

민법 제148조는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만 규정하고 있고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조건부 법률행위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일종의 권리로 보호하므로 제3자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해야 한다.

4) 적극적 보호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3. 조건의 성취확정 후의 효력

1)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제147조 제1항) 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으며(제147조 제2항), 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2) 비소급적 효력

조건 성취의 효력은 그 조건성취시로부터 생기고 성취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러나 특약으로 당사자가 조건성취와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제3항).

3) 증명책임

가) 정지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83.4.12. 81다카692).

나)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제3항 기한

I. 서설

1. 개념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법정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 아니다. 효력의 발생 또는 이행에 관한 것을 '시기'라 하고,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을 '종기'라고 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은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같으나 그 사실이 장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것인 점에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조건과는 다르다. 이러한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II.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시기는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요건으로서의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다. 종기도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내년 4월 1일부터)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불확정기한은 발생하는 시기가 현재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에서 조건과 구별된다.

III.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대개 기한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조건은 붙일 수 없지만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있다.

2)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면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즉 혼인, 이혼, 입양, 과양 등의 신분행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또 상속의 승인, 포기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피상속인과 채무자,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제493조)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제493조 제1항). 다만,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시기(지급일)를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4) 종기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대체로 해제조건에서와 같다.

IV.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의 도래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실현되는 것을 '기한의 도래'라고 한다(제152조). 기한이 기일 또는 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기일의 도래 또는 기간의 경과로 기한은 도래한

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된다.

2. 기한 도래전의 효력

1) 조건부 권리에서와 같이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으나 그 도래가 확실하므로 조건부권리보다도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에 민법은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에 관한 제148조와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제149조를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하고 있다(제154조).

2) 채무의 이행에 기한(이행기)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이미 채권·채무는 발생하였으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3. 기한 도래후의 효력

시기부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시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52조 제1항). 종기부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2항). 기한의 본질상 소급효는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V. 기한의 이익

1. 의의

1)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당사자중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지는 각 경우에 따라 다르다. 원래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가지는 경우가 있었으나(제693조, 무상임치) 실제로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제1항).

2) 무이자부 소비대차는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나, 무상임치의 경우는 채권자만이 가지게 된다. 이자있는 정기예금은 양당사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2. 기한이익의 포기

1)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제153조 제2항 본문). 무이자 소비대차에서 차주는 그 기한 전에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2)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처럼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제468조).

3. 기한이익의 상실

가. 의의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그를 신용하여 그에게 이행의 유예를 주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신용상실의 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법률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있다.

나. 법률의 규정

-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제388조 제1호)
-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 제2호)
- 3) 채무자가 파산한 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제3절 기간

I. 서설

1. 기간

기간이란 어느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적 간격(길이)을 말한다. 기간은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속한다. 그런데 기간은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법률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년(제4조), 최고기간(제15조, 제131조), 실종기간(제27조), 시효기간(제162조 이하) 등이다. 기간은 기일과는 구별된다.

2. 기일

기일이란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이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속의 관념은 없으나 보통은 '日'로 표시된다. 이 때 1일은 시간의 계속으로서가 아니고 통일된 불가분의 한 단위이다. 이행기(변제기), 재판기일, 변론기일 등이 이에 속한다.

3. 적용범위

민법은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56조 이하) 이는 기간계산에 관하여 보충적인 것이다. 따라서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로 다르게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115조).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와 공법관계에 적용된다.

II. 기간의 계산방법

1. 의의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자연적 계산방법과 역법적 계산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가) 자연적 계산방법

자연적 계산방법은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매우 정확하나 반면에 계산이 불편한 점이 있다. 민법은 대체로 단기간에 대해서는 자연적 계산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간 단위를 '시, 분, 초'로 정한다.

나. 역법적 계산방법

역법적 계산방법은 력(曆)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다소 부정확하지만 편리한 점이 있다. 민법은 장기간의 기간계산에 대하여 역법적 계산방법을 취하고 있다.

2.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방법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라 기간을 시·분·초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 계산한다(제156조).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분·초가 종료한 때이다.

3. 일·주·월·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방법

가. 기산점

1) 원칙

기간을 일·주·월·년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대판 1971.5.31. 71다87) 원칙이다(제157조 본문).

2) 예외

가)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제157조 단서).

나)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제158조).

다) 법령에 특별규정을 둔 경우(국회법 157조, 제165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라) 법률행위 등으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약정도 가능하다(대판 2007.8.23. 2006다62942).

나. 만료점

1)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한다(제159조). 그런데 판례는 정년이 53세인 경우에 그 만료일을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한다는(대판 1973.6.12. 71다2669) 입장이다.

2) 기간을 주·월·년을 단위로 정한 때에는 이를 日로 계산하지 않고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제160조 제1항). 따라서 월·년의 기간은 일수의 장단을 따르지 않는다.

3) 주·월·년의 처음(예: 일요일, 1일, 1월 1일 등)부터 계산한 때에는 그 주·월·년이 종료하는 때에 기간이 만료한다.

4) 주·월·년의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주·월·년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만료한다(제160조제2항). 다만,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예: 2월, 윤년 등)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제3항).

5)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그러나 기간의 초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대판 1982.2.23. 81누204),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른다.

다. 구체적인 기간계산법

1) 4.1. 오전 9시부터 9시간이라고 하는 때의 만료점은 4.1. 오후 6시이다.

2) 4.1. 오전 9시부터 일주일간이라고 하는 때의 기산점은 4.2. 오전 0시이고, 그 만료점은 4.8. 오후 12시이다.

3) 1994.4.1 오전 9시에 출생한 자는 2013.4.1. 오전 0시에 성년으로 된다(제4조, 민법 제158조, 제159조).

4) 3.31. 오전 9시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 때의 기산점은 4.1. 이고 만료점은 6.30 오후 12시이다.

4. 기간의 역산방법

가. 의의

기산일로부터 과거에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민법 기타의 법령에는 기간의 역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통설은 민법상의 기간계산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 구체적인 기간역산방법

1)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총회 1주간 전에 통지한다고(제71조) 한다. 이 때에 사원총회일이 4.1. 인 경우 그 기산점은 3.31. 24시가 되어 그날로부터 7일을 계산한 날의 말일인 2.25. 오전 0시에 만료하기 때문에 2.24. 중으로 총회 소집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발신주의의 경우이지만, 만약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2.24 중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례는 ‘선거일 전 3년간 사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것은 선거일 전날 24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하여 계산한 3년간 사이를 의미한다고 한다(대판 1979.3.27. 79수1).

3) 행정법령에는 ‘며칠 전에’ 또는 ‘...전 며칠에’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기간을 역산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즉 ‘선거일 5일 전’의 경우는 선거일은 초일이므로 산입하지 않고, 선거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5일이 되는 날의 이전을 말한다. 그러나 ‘선거일 전 5일에’의 경우는 선거 전일부터 계산하되, ‘전 5일에’라고 하였으므로, 5일이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다.